긴급입찰 사유서

사 업 명	2027년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
수요기관	게임물관리위원회(기타공공기관)
담당부서	교육정보센터(051-720-6890)

[긴급입찰 사유]

○ 관련근거

-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5조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 제4항
-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(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, 2026.1.2.) 제4조제1항

○ 본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공공사업의 비대면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에 따라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개발함

○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야 하며,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업자 대상으로 연 3시간이내의 법정교육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

○ 위의 사유에 따라 본 용역 사업은 제한경쟁 입찰 사업으로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법정교육 실시 및 경제위기 극복 등 계약지침의 긴급입찰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을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

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

GRAC Compulsory Security Stamp 31223134 2026/11/09 15:29:08